■ 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4.7.17>

[ ] 오수처리시설
[ ] 정 화 조 비정상운영 신고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 7일

신고인	성명(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)

시설소재지	
처리공법	처리용량(㎥/일)또는 처리대상인원(00명용)
비정상운영 (예정)일	
시설개선완료 예정일	
비정상운영사유	

「하수도법」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1.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・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)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・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・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수(민원실)	➔	검토 (담당과)	➔	현지확인 (필요시)	➔	결재	➔	통지 (필요시)
신고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